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계획(2차, 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공고는 행정정보만으로 지급대상 여부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을 위한 확인지급 시행 공고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확인된 신속지급에 대해서는 9.23(수) 既 공고

2020년 10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

2.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사항

-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간 동의 필요)
-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 지원요건 판단

- ① (일반업종)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 ('19년 이전 창업자)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
 - '19년말 기준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 '21.1월 부가세 신고로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가 원칙
- ('20년 창업자)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 국세청이 보유한 6~8월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②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면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① 집합금지 대상 : 200만원, ② 영업제한 대상 : 150만원

* 연 매출액이 일정 규모(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등)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5인(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

구 분	해당 업종 및 시설
①집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②영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추후 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타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포함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세부 지원기준(안) >

구분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여부	○	○	○
매출액 규모	연 4억원 이하	업종별 소기업 (예: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매출규모 이하
매출 감소	○	무관	무관
지원금액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및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14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단, 아래 경우에는 새희망자금 신청 가능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새희망 자금 지원대상인 영세 자영업자가 된 경우 등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반환확인서' 필요(고용센터 발급)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영세 자영업자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 필요(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으로는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자가진단표(붙임 제6호 서식)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확인지급 신청대상

- 새희망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자로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소상공인(신속지급 대상 미포함자)
- 추가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결정이 필요한 자
 - * 지자체 누락 특별피해업종, 공동대표, 미성년자, 가족 명의 계좌 수령(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취약계층 등

4. 확인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접수기간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단축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원칙) : '20.10.16(금)~11.6(금)
- 본인이 직접 신청 사이트* 접속(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후 증빙자료 업로드
 - *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새희망자금.kr"을 입력
- 현장 방문 신청(예외) : '20.10.26(월)~11.6(금)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 현장 방문 신청
 - * 지자체별 현장 접수처(전국 2,825개소) 현황 : 별도 첨부 파일 참조
 - * 현장 접수처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가 공지 예정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26(월)~10.30(금) 5부제 실시
 - * 11.2(월)~11.6(금) 출생연도 끝자리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 현장 방문 신청 5부제 일정 >

일자	10.26(월)	10.27(화)	10.28(수)	10.29(목)	10.30(금)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 (예: 1961년생, 1966년생)	2, 7	3, 8	4, 9	5, 0

5. 확인지급 신청서류

□ 공통서류 (현장 방문 신청에 한함)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없이 본인 인증, 기본정보 입력 등으로 갈음

* (기본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 등

구 분	증 빙 자 료
① 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체 및 대표자 기본정보, 입금계좌 정보 등 기재
② 대표자 및 계좌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③ 각종 동의서 (붙임 제2·3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추가서류 (신청 유형별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구 분	증 빙 자 료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관련 직종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영세 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 등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센터 발급)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 코드 기준으로는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자가진단표(붙임 제6호 서식) * 신청자 명단은 고용부에 통보하여 확인 예정이며, 자가진단표 허위 판정 시 환수 예정
② 공동대표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위임장(붙임 제4호 서식)
③ 가족 명의 계좌입금 필요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위임장(붙임 제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명의 통장 사본
④ 가족 대리 신청 (현장 방문 신청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위임장(붙임 제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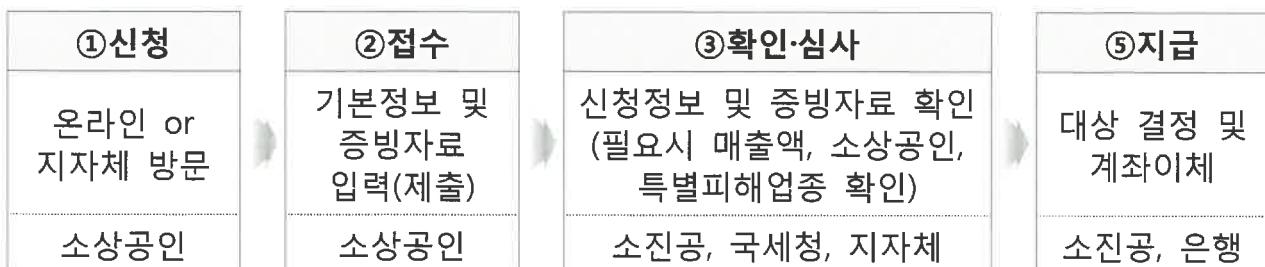
구 분	증 빙 자 료
<p>⑤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6~8월) 신청 사업체 (일반업종에 한함)</p> <p>* '19년 이전 창업자는 추가 매출 증빙서류 제출 불가(국세청 매출 정보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6~8월 기간 중 현금 매출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매출확인서(붙임 제5호 서식) - 통장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은행 직인(날인) 필수),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 상대방 서명인 필수), POS 현금 매출액 등 * 수기 작성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 제출자료는 국세청 통보 예정이며, 허위 기재 판정 시 지원금 환수
<p>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p> <p>*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인증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中 1
<p>⑦ 합기도 체육도장</p> <p>*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19.12.26)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 후 '20.6.1~6.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장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사실증명
<p>⑧ '20.6.1 이후 개인→법인 전환 사업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사실증명(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확인지급 신청 · 처리절차

□ 개 요

- 온라인 또는 지자체(방문) 신청 · 접수 후 기본정보 · 증빙자료 확인(소진공) 및 소상공인 · 매출액(국세청), 특별피해업종(지자체) 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 신청 처리 절차 >



□ 온라인 신청

-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 (기본정보 및 추가서류) "5. 확인지급 신청서류" 참조

- ⑤ (요건 확인) 소진공(집행검증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자('20년 창업자 매출 감소 신청 (일반업종) 포함)의 경우 국세청 추가 확인(소상공인, 매출 감소 여부 등)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특별피해업종 신청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특별피해업종(영업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해당 여부 추가 확인

- ⑥ (지급) 지급대상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현장 방문 신청

- ① (신청) 지자체(현장 접수처) 방문, 신청서류(공통, 추가) 제출

* (신청서류) "5. 확인지급 신청서류" 참조

- ②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 ③ (요건 확인) 소진공(집행검증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자('20년 창업자 매출 감소 신청 (일반업종) 포함)의 경우 국세청 추가 확인(소상공인, 매출 감소 여부 등)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특별피해업종 신청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특별피해업종(영업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해당 여부 추가 확인

- ④ (지급) 지급대상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이의신청

- 확인지급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붙임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온라인(원칙) 또는 지자체 방문 신청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8.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 1899-1082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 - 24시간 채팅 상담

불임**신청서식**

- (제1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서
- (제2호)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제3호)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4종)
- (제4호) 통합 위임장
- (제5호) 현금 매출 확인서
- (제6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
- (제7호) 이의 신청서

<제1호 서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서(필수)

접수번호 1)

↳ 상기란은 지자체 공무원이 작성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서

※ 해당 □ 칸에 "✓" 표시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취소, 반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을 학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며, 자금 수령 이후에는 수정 신청 및 반환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첨부 서류> * 본인 신분증 필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통장사본
 -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등 동의서(제2호 서식)
 -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제3호 서식)

1. (공동대표인 경우) 통합 위임장(제4호 서식)
 2. (가족 대리 신청 또는 가족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통합 위임장(제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가족 명의 계좌 신청 시)
 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인증서 등 확인서류
 4. (특고 관련 직종 사업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확인서 또는 반납 확인서, 자가진단표(제6호 서식)
 5. ('20.6.1~26 개업한 합기도장의 경우) 폐업사실증명
 6. (현금매출 누락분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현금 매출 확인서(제5호 서식) 및 해당 증빙자료
 7. ('20.6.1 이후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체 담당자가 접수시스템에 등록 시 자동 생성되는 번호 기재

<제2호 서식>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	○ 본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번호,업체명,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새희망자금 지원관련 적격여부 판단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새희망자금 취급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한은행,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한 민간기관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업체명, 통장계좌번호, 개업일, 매출액 및 매출증빙관련 서류 일체, 업태/종목, 지급액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이용기관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새희망자금 취급 지자체
- 이용사무 목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업체명, 개업일, 사업장주소, 대표자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고유식별정보 동의서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제3호 서식>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4종, 필수)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① 부정수급 금지

- 아래 확약인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인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 분	위 반 행 위	제 재 부 가 금 부 과 율(최 대)
지원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	500%
	2)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③ 새희망자금 오지급 시 반납 동의

- 상기 본인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3.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②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중복수혜 금지

- 본인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표의 중복 수혜금지 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만일, 중복으로 수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액 전액회수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중복수혜금지 대상]

기 관	명 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자금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해당 지원금 수령자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 or 반납확인서 제출시에만 지급 가능(세부내용 고용노동부 문의)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④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상기 본인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①, ②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제4호 서식> 통합 위임장(해당 시)

통합 위임장

* 위임하는자(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필요

1. 위임하는자(위임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공동대표(법임 포함) <input type="checkbox"/> 가족 명의 계좌 수령(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 <input type="checkbox"/>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2. 위임받는자(수임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3. 위임내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위임하는자(위임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	<input type="checkbox"/> 본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위임받는자(수임자) : (서명 또는 (인))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가족명의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제5호 서식> 현금 매출 확인서(해당 시)

현금 매출 확인서

※ '20년 창업자에 한하여 현금 매출 신고예정액 작성

1. 사업자 현황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 2020년 창업자에 한함)
사업장 연락처		휴대폰번호	
사업장주소			

2. 2020년 6~8월 현금 매출액 및 입증서류

구분	현금 매출액*	입증서류**
2020년 6월	()원	
2020년 7월	()원	
2020년 8월	()원	

* 국세청 신고 예정 현금매출 작성

** 현금매출 인정 자료 : ① 통장 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 은행 직인(날인) 필수
 ②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 상대방 서명인 필수)
 ③ POS 현금 매출 액

3. 제출 전 확인 사항

- 상기 현금 매출액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진 신고하여야 함
- 상기 현금 매출액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허위 판정 시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임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국세청장 귀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주의사항 : ① 위 기재한 매출액은 현금 매출액이며, 기 신고된 국세청 매출액(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등)이 포함되어 20년 6월□ 7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년 8월 매출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세회망자금 지급불가 ②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현금 매출액 차이 발생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장(이하 '특고'), 영세 자영업자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연번	내용	확인 (O, X)
1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2	본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까?	
3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회사(업체), 발주처 등으로부터 업무를 받아 영업을 수행하며 매출이 발생합니까?	
4	특정 회사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습니까?	
5	(화물차주인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에 해당하는 4개 품목을 운송하십니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 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참고) 산재보상법 제125조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판단기준

- ① 2번 또는 3번 해당 시 → 영세 자영업자로 보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신청
- ② 4번 또는 5번 해당 시 → 특고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신청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인, 서명)

<제7호 서식> 이의 신청서(해당 시)

이의 신청서

* 지원 불가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온라인 및 지자체 현장 접수처에 제출

신청인	접수번호 ¹⁾		지원 불가 통보일
	성명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상기 본인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불가 통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사유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 첨부서류 : 이의 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 최초 접수 시 휴대폰 문자에서 확인 가능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 접수처 (인천광역시, 총 114개)

시도명	시군구명	접수처	주소
인천시	중구 (12)	신포동 행정복지센터(2층)	인천 중구 제물량로 168
		연안동 행정복지센터(3층)	인천 중구 축향대로86번길 44
		신흥동 행정복지센터(2층)	인천 중구 제물량로80번길 3-14
		도원동 행정복지센터(1층)	인천 중구 도원로 42
		율목동 행정복지센터(2층)	인천 중구 서해대로483번길 3
		동인천동행정복지센터(2층)	인천 중구 참외전로72번길 25
		북성동 행정복지센터(1층)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44번길 13-2
		송월동 행정복지센터(2층)	인천 중구 참외전로37번길 5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어학실(3층)	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5층)	인천 중구 하늘달빛로 120
		운서동 행정복지센터(1층)	인천 중구 흰바위로27번길 10
		용유동 행정복지센터(1층)	인천 중구 마시란로 308-13
	동구 (11)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동구 석수로 96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	동구 화도로 41
		화수2동 행정복지센터	동구 화수안로 42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동구 수문통로 26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동구 인종로 635-20
		송림1동 행정복지센터	동구 송림로43번길 42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동구 안송로6번길 5
		송림3·5동 행정복지센터	동구 새천년로 72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동구 육송로10번길 31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동구 샛골로162번길 56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동구 금곡로36번길 16
	미추홀구 (21)	승의1·3동행정복지센터1층민원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92번길 21-17
		승의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31(승의동)
		승의4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156번길 32 (승의동)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 1층 120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98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3층 프로그램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마루로 56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3
		용현5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북로 60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옆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380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44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1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95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2층 사무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 29-1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옆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53번길 22
		주안2동 행정복지센터 지하1층 탁구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43번길 14-29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31번길 28-10
		주안4동 행정복지센터 1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남로 5(주안동)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2층 강의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462
		주안6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64번길59
		주안7동행정복지센터2층회의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265(주안동)
		주안8동 행정복지센터 승학골 북카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470번길26(주안동)

	관교동 행정복지센터 1층 회의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452
	문학동 행정복지센터 1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339
연수구 (6)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비류대로186번길 14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선학로 54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연수동 535-6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먼우금로 117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신송로 248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연수구 송도교육로 61
남동구 (20)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04(구월동)
	구월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08(구월동)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84(구월동)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7(구월동)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37번길 39(간석동)
	간석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6번길47(간석동)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간석동)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75(간석동)
	만수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1(만수동)
	만수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만수동)
	만수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11(만수동)
	만수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50번길 39(만수동)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28번길 3(만수동)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47(만수동)
	장수서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28(서창동)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43(서창동)
	남촌도림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25번길 43 3층(남촌동)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15(논현동)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48(논현동)
	논현고잔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32(논현동)
부평구 (22)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부평문화로37번길 1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부영로16번길 5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마장로 82 현대다심프라자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장제로 145 신명스카이홈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부평문화로106번길 17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동수로 70
	산곡1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마장로319번길 52
	산곡2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안남로 255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경원대로 1269-2
	산곡4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부흥로173번길 68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산청로127번길 3
	청천2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마장로410번길 5
	갈산1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주부토로 254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주부토로 173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후정동로 9
	삼산2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굴포로 137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동수로162번길 11

	부개2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동수천로 104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길주남로 117
	일신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경인로1148번길 6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열우률로 103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동암산로33번길 6-7
계양구(1)	계양구청 탁구장(지하 1층)	계양구 계산새로 88
서구(1)	서구청 경제에너지과(지역화폐팀)	서구 서곶로 307, 본관4층(심곡동)
강화군 (13)	강화읍사무소	강화읍 강화대로440번길 10
	선원면사무소	선원면 대문고개로 22
	불은면사무소	불은면 강화동로 562-3
	길상면사무소	길상면 강화동로 15-1
	화도면사무소	화도면 마니산로 703-14
	양도면사무소	양도면 강화남로 708-2
	내가면사무소	내가면 강화서로 249
	하점면사무소	하점면 강화대로 1220
	양사면사무소	양사면 전망대로 1391
	송해면사무소	송해면 전망대로 29
	교동면사무소	교동면 교동동로 485-13
	삼산면사무소	삼산면 삼산북로471번길 15
	서도면사무소	서도면 주문도1길 16
옹진군 (7)	북도면/장봉출장소	북도면 시로도 82
	연평면	연평면 연평중앙로24번길3
	백령면	백령로278번길61-2
	대청면	대청로19번길59
	덕적면	덕적북로 130
	자월면	자월서로 164
	영흥면	영흥로251번길90